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책자료

발행 2022. 03. 30.

**인수위에 제안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

순서

순서	2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취지	3
국정원 권한의 축소	5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7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8
국정원의 민간사찰·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10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취지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되어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원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만 받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해 왔습니다. 국정원의 설립 목적인 '국가안전보장' 대신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간첩조작, 국내 정치와 선거 개입 공작 등 온갖 불법행위를 벌이며,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역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도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원은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으로 꼽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20년에는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의 폐지,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던 국정원의 권한을 다소 줄이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시행을 3년간 유예했을 뿐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범위와 관련해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대응조치'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국정원 권한으로 추가시킨 반면, 국정원에 대한 감독장치로 제안된 정보감찰관제는 도입되지도 않았습니다.

2021년 초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이 담긴 국정원 문서들이 속속 공개·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직전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간에 대한 사이버사찰'의 위험이 강하게 제기되어 온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사실상 국정원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며 입법

논의가 대선 이후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개혁 대상인 국정원의 권한이 축소되기는커녕 그간의 개혁 성과를 무위로 돌리며 자신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장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책임졌던 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윤석열 당선인이야말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국정원 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여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원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로, 지난 2011년부터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 국정원 권한의 축소

- 요구1.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의 유예기간 삭제
- 요구2. 「국가정보원법」상 조사권, 대응조치 삭제
- 요구3. 신원조사권한 폐지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상 관련 규정 삭제,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 금지
- 요구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와 타 기관으로의 이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창설 이후 약 40년 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됨. 하지만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는데 그 시행이 3년이나 유예됨. 유예기간을 삭제하고 이관을 즉시 시행해야 함.

또한,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신설된 조사권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의 형사법상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 대응조치도 신설되었는데 그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내에서의 내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공작활동까지도 합법화시킬 수 있음. 신설된 조사권과 대응조치 모두 삭제되어야 함.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음. 개정 전의 법에도 국정원의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국정원의 신원조사 또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을 금지시켜야 함.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정원은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의 수립과 판단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편성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하고 마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음.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함.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은 제시된 바 없으며, 지난 대선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감넷에 국정원의 신원 조사 권한을 폐지해야 하며, 국정원을 통한 인사 검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내온 바 있음.

2.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요구5. 국정원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정보감찰관 신설
- 요구6.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 요구7.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검사, 적법활동 여부 등의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감찰관'을 국회 정보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해 국정원의 내부통제장치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2년마다 소속 위원이 변경되고 겸임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산하에 정보·인권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해야 함.

최근(1/27)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음.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공개는 물론 국가안보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각급 회의를 공개하는 등 국회 정보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3.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 요구8.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 요구9. 공공기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권한의 이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3145\)](#)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1220\)](#)이 계류되어 있고, 이 논의를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외관 상 '사이버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으로까지 확대하는데 입법의 목적이 있음.

국정원이 온라인을 통해 민간을 감시와 사찰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기본적으로 기밀성을 우선하는 정보기관이 정보투명성과 민관 협력을 근본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사이버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음.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현재 국정원이 보유한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권한 또한 다른 정부 부처로 이관해야 함.

한편,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3670\)](#)이 계류되어 있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위원회를 두고,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사이버보안본부를 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안으로 사이버안보에 관련 입법 논의는 이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집행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제시되지 않았음. 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때 국감넷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실 (ONCD)이 사이버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4. 국정원의 민간사찰·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 요구10. 정보공개청구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당사자에게 사찰문건 공개
- 요구11. 사찰정보 공개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요구12. 민관합동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2021년,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음. 국정원은 불법사찰한 문건을 정보공개하는 전제조건으로 '문건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어 사찰피해당사자조차 자신에 대한 사찰문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 하고 있음. 정보공개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자에게 문건을 공개해야 함.

국정원은 관련해 자체감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매우 제한된 결과에 불과함.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가 2021년 7월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 역시 구속력 없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공작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영삼 정부 이후 이루어진 모든 불법 사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별법 제정에 앞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해야 하며 이 기구는 불법사찰에 대한 조사에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함.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입장이나 정책은 알 수 없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때 국감넷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정원의 민간 사찰 문건 공개에는 찬성 입장을,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독립적 민관합동조사기구 통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책자료
**인수위에 제안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

발행일 2022. 03. 30.

발행처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 당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02-774-4551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참가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주 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참여연대